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약관 공시사항

1. 기본사항

제정일	개정시행일	판매종료여부(종료일)	기존고객적용여부
2014.02.04	2020.02.03	○ (22.01.01)	○

2. 개정대비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3. 담당부서명 : 여신심사관리부

담당자	책임자	승인자

■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주식회사 중국공상은행 앞

년 월 일

은행은 채무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인)	주소
-----	-----	----

본인은 주식회사 중국공상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파악합니다.

제1조 대출조건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개인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V"표시합니다)

대출과목(대출종류)			거래구분	<input type="checkbox"/> 한도거래 <input type="checkbox"/> 건별거래	
대출(한도)금액	금 원 정				
대출개시일	년 월 일		대출만기일	년 월 일	
대출이자율 (연이율)	□고정금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	대출기간만료일까지 □연()% □()기준금리 + ()% □기타			
	□변동금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COFIX금리 ()% + 은행내부가산금리 ()% □91일물 CD유통수익률 + 은행내부가산금리 ()% □은행내부기준금리 ()% + 은행내부가산금리 ()%			금리변동주기 ()개월
	□혼합금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고정금리 대출개시일로부터 ()년()개월간	□5년물 금융채금리()% + 은행내부가산금리()%		
이자 및 지연배상금률 계산방법	1.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제3조제5항을 적용합니다. 2.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3.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에 의해 결정된 약정이자율에 다음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최고 연()%를 적용합니다.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3개월 초과인 경우()%				
	*한도거래: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의 단일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대상 □비대상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 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으로 하며, 중도상환수수료율은 ()%, 최초대출일로부터 ()년(기한연장포함)까지 적용합니다.			
대출 실행 방법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대출개시일로부터()년()월 이내에서 중방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대출개시일로부터()년()월 이내에서 매()개월마다 분할 실행합니다. □기타()				
상환방법	□일시상환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음 □()년()월		
		상환방법	□최초 대출 실행후부터 매()개월 마다(□원리금□원금)균등분할 상환합니다. □대출개시일로부터()년()개월 동안 거치하고, ()년()월()일부터 매()개월 마다 (□원리금□원금)균등분할 상환합니다. □대출금액의 ()% (금)을 대출(분할상환)기간동안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 [대출금액의 ()%, 금()원]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상환합니다. □기타 ()		
분할상환일	매월()일로 하며, 해당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은행 영업시간 마감 이후 ATM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 입금받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지급 방법	□최초이자: 대출개시일로부터()개월 이내,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 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대출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기타				
대출금입금계좌번호	무인강, 무통장 출금 등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등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할 원금, 원리금, 이자, 대출 관련 수수료 등과 제비용(근저당권 설정비, 수입인지대, 화재보험료 등)에 대하여 대출금 입금(실행)계좌에서 출금 처리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예금주		(인)
대출기간 자동연장	□신청 □미신청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기간 연장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은행은 "대출기간 연장 및 금리변경"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은행이 정하는 단위로 상환기일의 연장 및 금리변경 처리하기로 하며, 은행은 연장된 대출금의 이자율과 새로운 상환기일 등을 연장 후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상환 및 이자 지급 시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 입금 본인 당일 중 상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 ① 제1조에서 선택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에 의한 대출이자율은 대출실행일(통장회전대출의 경우 대출승인일, 분할취급대출은 건별로 매 대출실행일) 현재의 「기준금리+가산금리」에 의해 결정되며, 변동금리에 의한 대출이자율은 매 금리변동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변경하여 적용됩니다.
- ② 「기준금리」는 자금조달원가, 업무원가, 신용원가, 세금, 주택신보율연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 ③ 「기준금리」는 자금조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장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기간에 따른 실질조달금리 및 시장상황 등을 반영한 유통성프리미엄과 정책적 스프레드(가산금리) 등의 자금원가 요소가 가산됩니다.
 1. CD연동금리: 3개월마다 시장의 CD유통수익률(91일용)에 신규 시 결정된 가산이율을 더하여 변경됩니다.
 2. 기준금리(Prime Rate)연동금리: 은행이 고시하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변경됩니다. 현재 은행이 고시하는 기준금리는 연()%이며, 신탁 기준금리는 연()%입니다.
 3. 금융채연동금리: KIS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가 고시하는 「재산정주기 해당 기간의 AAA등급 금융채유통 수익률」중가(3사 평균)의 단순평균값(6개월, 1년, 2년, 3년, 5년)을 적용한다.
 4. COFIX연동금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직전월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금리 또는 잔액기준 COFIX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변경됩니다.
- ④ 기타 예적금담보대출, 신탁대출 등은 예적금 금리 연동 또는 시장금리연동기준금리 준용(± α)을 은행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⑤ 제1조의 대출기간 자동연장에 따라 기간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시점에서 은행이 정한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변경할 수 있기로 하며, 은행은 연장된 대출금의 이자율과 새로운 상환기일 등을 연장 후 10일 이내에 우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⑥ 채무자는 제5항에 의하여 통지된 이자율 등 변경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일 까지는 변경 전 이자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또한, 통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제3조 지연배상금

- ① 어차분할상환원리(리)금율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에서 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채형저축자금대출 중 소액자금대출 및 적립식 신탁대출의 경우, 상계전일까지는 지급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상계 후 예는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④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 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분할상환원리(리)금의 상환율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4조 중도상환수수료

- ① 채무자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조 약정한 대출기일(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 이하 같음)전에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조의 계산산식에 의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대출 잔여일수 등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같이 하도록 합니다.
 1. '대출 잔여일수'는 상환방법에 상관없이 상환일로부터 약정한 대출기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대출기간에서 경과일수(최초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일수)를 차감하여 구합니다.
 2.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약정한 대출기일까지로 계산되되, 3년이 초과 하더라도 3년(일수)로 정합니다.
 3. 중도상환수수료는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포함)이내에 적용합니다.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1. 대출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2. 은행에서 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등에 해당되어 은행이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3. 담보물건 공중수용 등 공익 목적 국가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기상환의 경우
 4. 기타 은행이 정하는 경우

제5조 담보권 설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약정에 그 중서(통장)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용되는 금액을 포함)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징려권, 법정징려권 등에 미칩니다.
-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 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이자 원가 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 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원리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에서 거래 기본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담보보험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설정된 대출로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제7조 인시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시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시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이 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에 준하여 곧 갈기로 합니다.

제8조 자료의 제출 등

- ① 본인은 은행이 은행에서 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18조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자료를 곧 제출하기로 합니다.
- ② 본인은 은행이 따로 정한 부채 현황표를 제출함에 있어 본인의 부채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은행이 별도로 조회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자료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신용정보자료에 부채현황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신용정보자료 여백에 포함시켜 제출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제출 자료가 허위, 위변조, 불실성 작성 또는 고의적인 부실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는 본인은 은행에서 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따른 기한 전 채무변제의 의무를 부담함과 아울러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로 등록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종별	
통서번호	
계좌번호	
명의인(또는 위탁자)	
수익자	
금액(계약액)	
년 월 일까지	
입금누계	통화: <input type="checkbox"/> KRW <input type="checkbox"/> CNY <input type="checkbox"/> USD
담보제공금액	금액: ()
승서일자	
지급기일	

*채무자 명의가 아닌 예금 등(제3자 담보)을 질권 설정 할 경우에는 별도의 질권 설정 계약서를 징구하여야 함.
*담보제공금액을 외화로 정한 경우, 원화 환산에 적용할 환율은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변제금을 수령할 시점 당일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로 적용합니다.

제9조 기타 특약사항

채무자: (서명 또는 인)

1. 본인은 은행에서 거래 기본약관(가계용)과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2. 본인은 가계대출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은행직원과 상담하여 가계대출상품설명서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3.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이 자율 인상 시에는 채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제10조(대출실행 중단)

은행은 대출계약 체결 후 대출실행 전에 차주에게 대출 증가, 연체 발생, 신용등급 하락 등 차주의 신용위험, 상환능력이 의의되거나 차주가 제공한 담보의 내용이 달라져 대출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대출정보 통지 서비스

■ 신청내용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SMS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원치 않음	통지내용	<input type="checkbox"/> 대출취급통지 <input type="checkbox"/> 대출정보통지
------	--	------	--

○ 대출취급통지: 신규, 한도동축, 증액, 채무인수 거래 시 통지
○ 대출정보통지: 이자(원리금)납입 예정일 및 예정금리 통지, 대출금리 변동통지, 대출상환통지, 기한 연장 통지

■ 서비스안내

1. 대출정보 통지서비스는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또는 E-메일로 해당 내역에 대해 1회 통지되며, 대출금이 연체 중이거나 고객사정(휴대폰 전원 꺼짐, 통화 불능 지역, 스팸 메시지 분류 등)이 있는 경우 통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통지 내용은 각 통지 기준일에 작성된 것으로, 기준일 이후 대출내역(대출금액, 금리 등)이 변경된 경우 통지 내용은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통지여부 및 내용과 상관없이 약정서에 따라 이자(원리금)를 납입해야 합니다.
3. 연락처 및 서비스 변경신청은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인내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입인자 접부단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확인
	- 상기 채무자가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자필로 기명 및 날인(서명)하였음을 확인 - 이자(원리금)자율이체 지정결제계좌 및 예금담보대출 예금계좌의 인감대조 확인 확인자: 직.성명 (인) 점검자: 직.성명 (인)